

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

검 토 보 고

I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1942호
2. 제출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3. 제출일자 : 2024. 5. 27.
4. 회부일자 : 2024. 5. 30.

II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예비비 지출 결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, 지방재정법 제43조,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·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자 함.

III. 주요내용

○ 지출내역 :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 8개 사업, 총 25건

(단위: 천원)

예산액	지출결정액	지출액	다음연도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,000,000	16,072,668	15,277,768	260,812	534,088	

I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심혁보)

1. 주요내용

-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집행현황은 사용결정액 160억 7천 3백만원 중 지출액은 152억 7천 8백만원(95.1%)이며,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6천 1백만원(1.6%), 집행잔액은 5억 3천 4백만원(3.3%)원임.

2. 검토의견

가. 총괄

-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00억원으로 총 25건의 사업에 160억 7천 3백만원을 사용결정하여 152억 7천 8백만원(95.1%)을 지출하였고,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6천 1백만원(1.6%)이며, 집행잔액은 사용결정액 대비 3.3%인 5억 3천 4백만원임.

나. 지출결산

1) 예비비 지출 내역

- 예비비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¹⁾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정확도를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것으로,

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예비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(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2).

- 2023회계연도의 예비비 예산액(200억원)은 전년도 예산액(400억원) 대비 50% 감소하였으며, 사용결정액(160억 7천 3백만원)은 전년도(165억 5천 7백만원) 대비 2.9% 감소하였음.

[표-1] 예비비 결산 내역

(단위: 백만원, 건)

회계연도	예산액	예비비 사용 내역				
		건수	사용결정액	지출액	다음연도이월액	집행잔액
2023	20,000	25	16,073	15,278	261	534
2022	40,000	36	16,557	14,982	1,359	217
증감	△20,000	△11	△484	296	△1,098	317

가) 일반예비비 사용 내역

[표-2] 일반예비비 결산 내역

- 2)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,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·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 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.
 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(단위: 백만원, 건)

회계연도	예산액	예비비 사용 내역				
		건수	사용결정액	지출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
2023	10,000	17	13,054	12,623	0	431
2022	22,000	18	6,256	6,080	0	175
증감	△12,000	△1	6,798	6,543	0	256

- 2023회계연도의 일반예비비 예산액은 10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0억원 대비 54.5% 감소하였으며, 사용결정액(130억 5천 4백만원)은 전년도(62억 5천 6백만원) 대비 108.7% 증가하였음.

[표-3] 일반예비비 결산 내역

(단위: 천원)

사업내용	사용결정일	사용결정액	지출액	집행잔액
민사소송(가칭 노이초 부지 환매권 관련)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	'23.1.31.	758,673	755,502	3,171
	'23.5.11.	8,978,189	8,702,821	275,368
계		9,736,862	9,458,323	278,539

- 일반예비비 사용 사업 중 사용결정액이 가장 높은 사업은 ‘공유재산및물품관리’ 사업의 ‘민사소송(가칭 노이초 부지 환매권 관련)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’ 으로 무려 97억 3천 7백만원이 사용결정되고 94억 5천 8백만원이 지출되었음.
- 동 사안은 서울시교육청이 2014년 초등학교 설립 계획을 취소하면서 토지소유자들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게 된 것으로

2023년 1월 동 사안의 패소가 확정되었고 이후 다른 토지소유자와

의 소송 또한 패소하는 등 판결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(원금 및 이자)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는바,

서울시교육청은 이를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여 불필요한 추가 분쟁을 예방하고 고율의 지연이자로 인한 추가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예비비를 사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.

- 그러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고 긴급한 사안일 경우 사용하는 것이 기본원칙으로,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고려하여 그 필요성과 예비비 규모의 적정성을 고려해야 할 것임.

[표-4] 서울시교육청 분기별 예비비 내역 보고 자료

(단위: 천원)

기관명	사업명	검토 의견	일 자	금 액
교육 재정과	민사소송(가칭 노이초 부지 환매권 관련)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가칭 노이초 부지 환매권과 관련하여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(항소심)이 2022. 12. 14. 피고(서울시교육감) 패소 판결 - 2023. 1. 5. 해당 사안이 패소로 확정됨에 따라 판결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(원금 및 이자) 지급 의무 발생 - 신속한 손해배상 이행을 통해 불필요한 추가 분쟁을 예방하고, 고율의 지연이자에 따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 있어 예비비 지원 	2023-01-31	758,673
교육 재정과	민사소송 (가칭 노이초 부지 환매권 관련)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 (2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가칭 노이초 부지 환매권과 관련하여 진행중이던 민사소송 중 1건이 추가 패소하였고, 잔여사건(5건)에 대하여도 청구인낙 조치를 취할 예정임 - 손해배상액 법정 이율이 연 12%에 달하는 상황에서 패소확정(1건) 및 확정예정(5건)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(원금 및 이자)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여, 불필요한 추가 분쟁을 예방하고 고율의 지연이자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필요 있어 예비비 지원 	2023-05-11	8978,189

○ 이와 관련하여 2023회계연도에 소송과 관련된 일반예비비 지출액은 99억 4천 3백만원(7건)으로 전체 일반예비비 지출액 126억 2천 3백만원의 78.8%를 차지하였으며,

이는 전년도 소송 관련 일반예비비 지출액 3억 5천 9백만원(2건)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.

- 그러나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감 및 소속 행정기관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대한 소송배상금을 행정관리담당관에서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서³⁾ 동 사안의 패소를 대비한 금전배상액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관행은 예비비를 소송 관련 비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됨.

- 따라서 차후 예산 편성 시에는 개별 사안에 대한 금전배상금을 부서 또는 사업별로 편성하기보다 행정관리담당관에서 소송배상금을 적정 규모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.

○ 아울러 동 사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있어 서울시교육청의 분발이 요구됨.

3) 2021년 결산 기준, 행정관리담당관에 편성된 소송배상금은 1억 4천 2백만원이고, 소송포상금까지 포함할 경우 1억 4천 9백만원임. 이 중 9천 9백만원이 집행되었고, 5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.

※ '소송배상금'은 교육감 또는 소속 행정기관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 패소할 경우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이나 소송비용결정금을 의미하고, '소송포상금'은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공무원이나 승소에 기여가 큰 공무원 등에게 포상하기 위한 예산임.

나) 재해·재난 목적예비비 사용 내역

[표-5] 목적예비비 결산 내역

(단위: 백만원, 건)

회계연도	예산액	예비비 사용 내역				
		건수	사용결정액	지출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
2023	10,000	8	3,019	2,655	261	103
2022	18,000	18	10,301	8,901	1,359	41,069
증감	△8,000	△10	△7,282	△6,246	△1,098	△40,966

- 2023회계연도의 재해·재난 목적예비비 예산액(100억원)은 전년도 예산액(180억원) 대비 44.4% 감소하였으며, 사용결정액(30억 1천 9백만원) 또한 전년도(103억 1백만원) 대비 70.7% 감소하였음.
- 목적예비비의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총 8건 중 7건이 ‘학교시설환경개선’ 사업이었고 대부분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긴급 시설 복구 사업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예비비 집행 요건을 충족하는바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‘영상고 기숙사 화재 피해 복구’의 경우 화재는 9월에 발생하였으나 예비비 사용결정일은 12월로, 서울시교육청은 재해·재난 관련 목적예비비에 대해서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적기에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.
- 특히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출을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사용결정일이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 시점 이후인바, 이와 같은 경우 관련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음.

[표-6] 서울시교육청 분기별 예비비 내역 보고 자료

(단위: 천원)

기관명	사업명	검토 의견	일 자	금 액
교육시설 관리본부	영상고 기숙사 화재 피해 복구	- 2023. 9. 13.(수) 영상고 기숙사 5층에서 키보드 전 동배터리 폭발로 추정되는 예측하기 어려운 화재 가 발생하여 일부 기숙사실이 전소하고, 화재 그을 음이 5~7층 기숙사 전체를 뒤덮어 기숙사를 사용 하지 못하고 교육연수원 숙소동을 임시 기숙사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버스로 통학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상황 발생 - 신속한 보수공사를 통한 안정적인 교육환경 회복을 위해 예비비 지원	2023-12-01	1,294,764

2) 예비비 지출 사업의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

[표-7] 방일초 예비비 사고이월 내역

(단위: 천원)

사용 결정액	지출액	다음연도 (사고)이월액	집행잔액	사용결정일	사용결정사유
490,000	229,174	260,812	14	'23.8.1.	- 2023.7.11.(화) 집중호우로 빗물이 역 류하여 배수관 파손 발생 - 교사동 하부 일부 지반 및 인접 사 면이 유실되어 보강공사 필요 - 교사동 후면 경사지 위험수목 제거 와 옹벽 등 학교 내 전반적인 배수시 설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 필요 - 신속한 보수공사를 통한 정상적인 교육환경 회복을 위해 예비비 지원

- 2023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내역 중 ‘방일초 집중호우 대비 안전
위해요소 개선공사’의 경우 총 4억 9천원의 예비비 사용결정 후 4
6.8%인 2억 2천 9백만원만 지출되고, 53.2%에 해당하는 2억 6천
1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됨.

- 동 사업은 집중호우로 인해 배수관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예비비 사용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나 예비비 사용결정액의 절반 이상이 사고이월된 것은 방학기간 또는 다음연도에 공사를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,
 - 이는 예비비가 사안의 긴급성에 의해 집행되어야 하고 시기적으로 본 예산 편성 등 일반적인 예산편성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하여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예비비 제도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,
 - 사전검토 부족으로 인한 예비비의 이월은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적 사유인 이월제도를 남용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예비비 편성 및 집행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.

- 이상으로 「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